

가맹본부·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·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이유서

◇ 개정 이유

-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,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

◇ 주요 내용

가. ‘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’ 유도

-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된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상향 조정
- 「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」 반영 시 가점 부여

나.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 제고

- ‘가맹본부·가맹점사업자 매출액 증가율 비교’ 항목 점수구간 세분화
- 상품 대금 신용카드 결제 허용에 대한 가점 강화

다. 비지수기업의 협약이행 평가 참여 독려

- 평가등급이 ‘양호(85점 이상)’인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 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확대
- 평가 부진기업 및 평가 미참여 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시

라. 기타 평가상 문제 보완 및 실효성 제고

- 법 위반 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
- ‘광고·판촉행사 법정동의비율 충족 여부’ 항목 삭제
- 기타 오기 정정 및 문언 명확화